

★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3학년도 연구년교수 선발 계획」에 따름

1. 목적

- 교원에게 대학의 일상 업무인 강의 등 교수로서의 수행의무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하고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연구년교수의 구분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하며, 연구년교수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한다.

구분	정의
연구년교수 가형	특정한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연구에만 전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연구년교수 나형	학문연구, 교재개발 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연구기간

- 연구기간: 학기단위로 1년 이내
 - ※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장기간은 휴직 처리
- 연구 개시일: 학기개시일(2023. 3. 1. 또는 2023. 9. 1.)
 - ※ 파견대학의 학기 개시일이 8월 1일인 경우 1개월 조정 가능
- 연구기간 변경: 1학기에서 2학기로만 변경 가능

□ 연구비 지원액

구분	연구비 지원액(1인당)	비고	
연구년교수 가형	국외	20,000천원	※ 1년간 연구비 지원액으로 한 학기일 경우 반액 지원
	국내	9,000천원	
연구년교수 나형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여비(정산 불필요)로 지급

3. 지원절차



4. 연구계획 변경

- 연구년교수는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부서	비고
연구년교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단대->R&D혁신본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 반드시 총장 사전 승인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연구변경(국외 → 국내, 다음 년도 연기)은 불가하며, 조기 복귀 또는 포기하여야 한다(연구비 환수 기준에 따라 연구비는 반납 또는 환수)

5. 연구결과 보고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처
연구년교수 가형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R&D 혁신본부
	연구 실적물 ① 연구 실적물 보고서 ② 국내(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부 또는 전공분야 저서(전공교육관련저·역서) 1부 ※ 제출한 연구계획의 주제와 일치하고 '키워드' 를 포함하면 관련 논문으로 인정 ③ (예능계열 분야) 연주, 전시, 발표 등의 실적으로 대체 가능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2년 이내	R&D 혁신본부
연구년교수 나형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R&D 혁신본부

○ 연구 실적물(논문) 사사 표기방법

- 연구 실적물(논문) 첫 페이지에는 반드시 사사를 아래와 같이 표기 하여야 함

국문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영문	(예시)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23

6. 연구비 환수(반납) 처리 기준

사유	산정기준
출국지연, 일시귀국, 조기복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국지연, 일시귀국 및 조기복귀 등 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수비 중 <u>왕복 해외 교통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u> 월할 계산하여 반납 반납액 산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 - 30일은 1월로 계산(다만,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잔여일수 15일 미만은 절사) (예시1) 일시귀국 10일, 조기복귀 15일(총 25일) ⇒ 환수금 없음(30일 이하) (예시2) 일시귀국 15일, 조기복귀 30일(총 45일) ⇒ 환수금: (총지원액 - 왕복해외교통비) ÷ 12월 × 1개월
연구실적물 기한 내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전액 반납
연구년교수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 전액 환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연구년교수 가형의 지원 경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총장이 정함

7. 결과보고 의무 미이행 시 제재사항

구분	결과보고	제재사항
연구년교수 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실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연구년교수 선발 제외 3년간 교내 공모과제 등 교내 연구과제 선발 제외 연구비 전액 환수
연구년교수 나형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연구년교수 선발 제외 3년간 교내 공모과제 등 교내 연구과제 선발 제외 향후 명예교수 추대 제외

8. 일시귀국 및 조기 복귀 등 처리 사항

○ 일시귀국

- 연구년교수(가형)는 직계가족의 병고, 사망, 혼인 및 연구와 관련된 학술회의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귀국 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 1주일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출국 할 때에는 총장에게 재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부서	비고
연구년교수(가형) 일시 귀국 사유서	단대→교무과	귀국 1주일 이전에 반드시 총장 사전 승인
연구년교수(가형) 재 출국 신고서	단대→교무과	

○ 조기복귀

- 연구년교수가 연구기간을 조기 단축하여 복귀하고자 할 때에는 조기 복귀 전까지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부서	비고
연구년교수 조기복귀 사유서	단대→교무과	반드시 총장 사전 승인
연구년교수 연구계획 변경신청서	단대→R&D혁신본부	연구기간 종료 이전까지 제출

○ 복귀 의무

- 연구년교수는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한다.

9. 유의사항

- 연구년교수로 허가받은 교원이 이 기간 중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연구활동에 중대한 위반을 할 경우 총장은 연구년교수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연구년교수 가형이 취소된 교원은 연구비 지원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연구년교수로 선발된 자는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연구영역 “자율연구 과제”에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년교수 가형은 연구실적물을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과 자율연구과제 연구실적물을 각각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년교수의 담당 교과목은 가능한 한 강좌개설 제한 또는 소속 학과(부) 전임교원이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전공필수 강좌와 졸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학부 4학년 전공 강좌는 예외로 한다.